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주차관리과-1472
등록일자	2016.1.12.
결재일자	2016.1.12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자동차정비팀장	주차관리과장	안전교통국장		
고재철	박노용	양미영	01/12 代신동명		
협조자					

- 주민불편 해소 및 범질서 확립을 위한 -

## 2016년 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정비계획

- 추진기간 : 2016. 1. ~ 12. (연중)
- 추진대상
  - 방치자동차 처리 및 방치행위자 수사
  - 검사미필 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
  -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차량
- 추진반 : 2개반 5명(자동차정비팀장, 조명복, 이용식, 박수정, 고재철)
- 조치사항
  - 방치자동차 :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 등 강제처리 절차 진행후 직권말소
  - 방치행위자 : 범칙금 부과(통고처분) 또는 사건 검찰송치
  - 검사미필 자동차 : 번호판 영치후 소유자에게 영치사실 통보
  -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차량
    -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(이륜자동차 포함) :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
    - 안전기준 위반자동차 : 과태료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
  -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: 과태료부과
- 소요예산 (14,170천원)
  - 사무관리비 : 방치관련 홍보물 제작 등 ☞ 3,370천원
  - 공공운영비 : 차량 유류대금 및 유지관리비 ☞ 10,800천원

강 남 구  
(주 차 관 리 과)

#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<b style="color: green;">관련 규정 및 근거</b>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 • 자동차관리법 관련규정 적시
<b style="color: green;">추진 경위</b>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 • 주민불편 해소 및 범질서 확립
<b style="color: green;">예산 사항</b>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 • 2016년 예산 편성분 반영
<b style="color: green;">수혜자 및 범위</b>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 • 강남구민
<b style="color: green;">분야별 검토사항</b> (계속 : ) (신규 : )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 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 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 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 ) ⑤ 시장조사 ----- ( 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 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 O 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 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 ) 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
<b style="color: green;">타 기관 사례</b>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 • 해당없음
<b style="color: green;">전문가 자문</b>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 • 해당없음

- 주민불편 해소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-

# 2016년 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정비계획

- 장기간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장애로 구민불편을 가중시키는 무단방치 자동차(오토바이 포함)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방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자동차 방치행위를 근절하며,
- 검사미필 자동차, 임의 개조차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자동차 안전도 확보 및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.

## I 관련 법규

- 『자동차관리법』 제26조(자동차의 강제처리), 같은법시행령 제6조
- 『자동차관리법』 제29조(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)
- 『자동차관리법』 제37조(점검 및 정비명령 등)
- 『자동차관리법』 제43조(자동차검사), 제43조의 2(자동차종합검사)
- 『자동차관리법』 제82조벌칙, 제85조통칙 내지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

## II 2015년 추진실적

### 방치자동차 및 방치행위자 처리

방치자동차				방치행위자	
발생건수	자진이동 (소유자인계)	강제처리 (견인 및 폐차)	진행중	검찰송치	범칙금징수
621	272	302	47	59건	21건 (19,400천원)

### 검사미필 자동차 및 불법 개조차량 조치

구분	계	검사미필 번호판영치	적발	임시검사 지시	원상복구 명령	시정 지시
건수	67	4	21	7	29	6

### Ⅲ

## 추진 개요

□ 추진기간 : 2016. 1. ~ 12. (연중)

□ 추진대상

- 방치자동차 : 도로,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절차이행후 강제 폐차
- 방치행위자 :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해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하고 거소불명자 등 통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방치행위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
- 검사미필 자동차 : 자동차검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
-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차량
  -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(가스방전식) 전조등 설치 자동차
  - 배형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·창문을 구조변경하거나,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불법구조변경한 자동차 등
  - 불법 개조한 50cc이상 이륜자동차
-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
  -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 위·변조, 탈착 자동차 등

□ 세부 추진내용

○ 추진반 운영 및 업무분장

총괄	1반	2반
자동차정비팀장	박수정, 고재철	조명복, 이용식
· 1 반 : 방치행위자 조치 (범칙금부과 및 검찰 송치 및 순찰)		
· 2 반 : 방치자동차 단속 (견인 및 강제처리 및 순찰)		
· 공통 : 검사미필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단속		

※ 자동차안전기준 및 불법 개조차량 단속 : 교통안전공단 합동 실시

- 불법 자동차 중점 단속기간 운영 : 연2회 (5월, 10월)
- 불법 자동차 중점 단속 홍보
  - 무단방치 및 검사미필 등에 대한 주민협조 및 신고요령, 처리절차, 불법 자동차 운행시 처벌내용 등을 강남구청뉴스 및 전광판 등에 홍보
- 주요 간선도로 순찰 강화 : 1일 1회 이상

## □ 조치사항

- 방치자동차 : 자진처리 안내(소유자인계) 또는 강제처리 절차 진행후 직권말소
- 방치행위자 : 범칙금 부과(통고처분) 또는 사건 검찰송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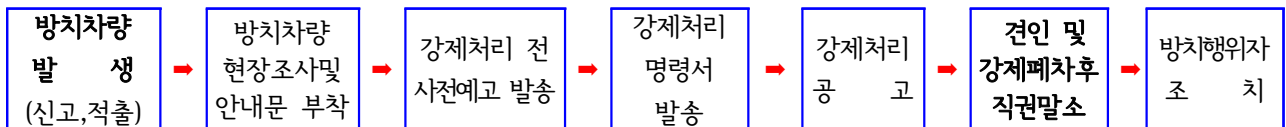
※ 무단방치 행위자 범칙금 부과 기준

구 분	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	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
승용 및 경소형 화물자동차	20만원 범칙금 부과	100만원 범칙금 부과
중형, 대형 화물자동차	30만원 범칙금 부과	150만원 범칙금 부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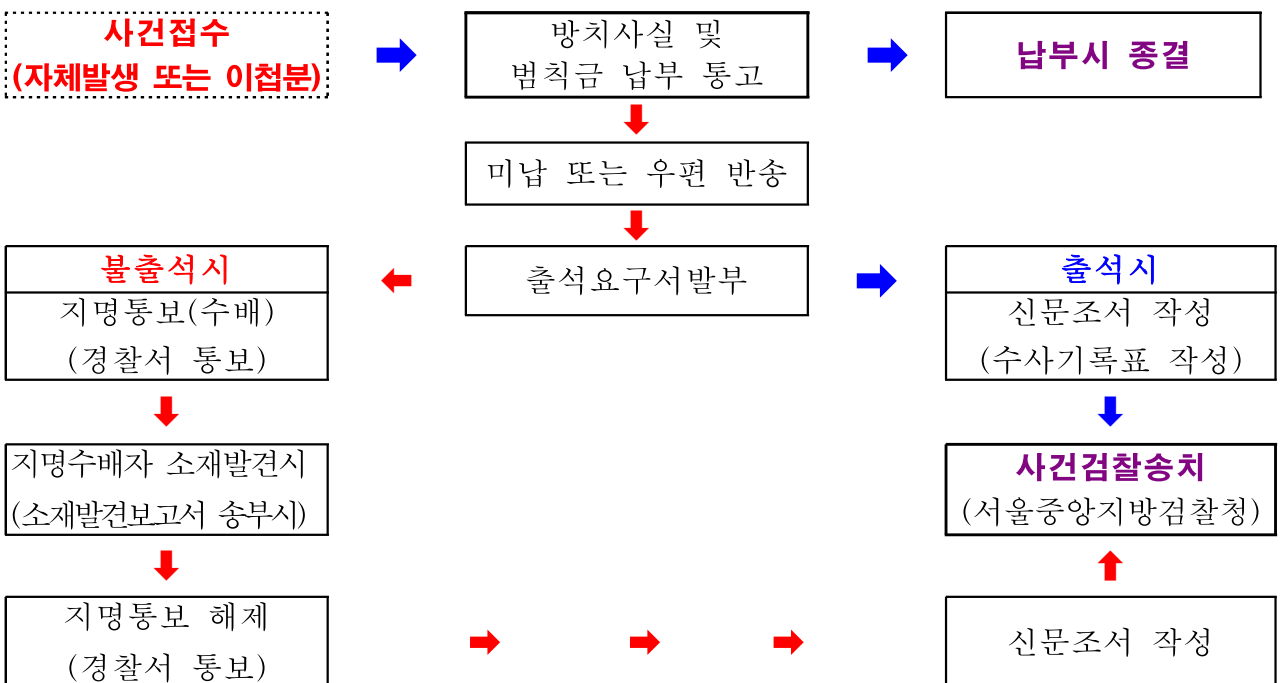
- 검사미필 자동차 : 번호판 영치후 소유자에게 영치사실 통보
-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차량
  -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(이륜자동차 포함) :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
  - 안전기준 위반자동차 : 과태료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

## IV 추진절차

### □ 방치자동차 처리



### □ 방치행위자 조치



## V

### 소 요 예 산(14,170천원)

#### 방치자동차단속 예산

[ 공공운영비 ] -----3,370천원

- 방치차량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 : 1,050천원
- 번호판 영치 및 방치차량 현장근무복, 구두 등 : 1,320천원
- 방치차량 견인 : 1,000천원

[ 사무관리비 ] -----10,800천원

- 차량 유류비 : 200,000원\*2대\*12개월 = 4,800천원
- 차량 유지관리비 : 250,000원\*2대\*12개월 = 6,000천원

#### 계약방법

- 300만원 이상 : 전자공개수의계약
 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②항
- 300만원 미만 : 수의계약
 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①항5호

#### 예산과목

- 주차관리과, 선진교통질서확립, 질서확립을위한교통소통개선, 방치자동차단속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(3,370천원) 및 공공운영비(10,800천원)

## VI

### 기 대 효 과

- 주택가, 공터 등 사유지내 방치자동차 신속처리로 도시미관 개선
- 주차공간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으로 구민불편 해소
- 불법 자동차의 사회범죄 이용 방지
- 불법 개조행위 근절로 자동차안전성 확보
- 방치행위자 통고처분으로 전과자 양산 방지
-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 부여 및 법질서 확립. 끝.